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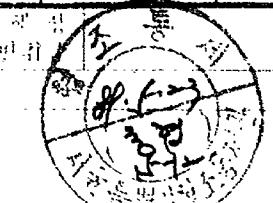
도	검	요
문서	자료제공	복
등록	집	회관
국장		

문서번호	231-6747
문서명	기안용지
부록	1. 증명서 10. 5. 3. 1.
수신처	영주
보내는기관	89. 5.
사내번호	519
부	도서관기록부
주	서울대학교
기	서울대학교
관	서울대학교
서	서울대학교
관련부록	증명서
부	도서관기록부
주	서울대학교
기	서울대학교
관	서울대학교
관련부록	증명서

# 기안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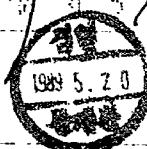
번호: 231-6747

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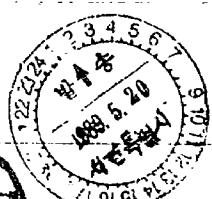


7h 026 5/9

한국당  
국회통계과 행정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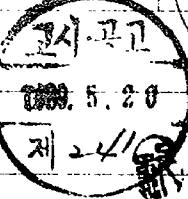
한국당



기안참조

기장

도서관기록서일(학과)증명서



(2) 10: 내부결재

1. 관리2423~54호 (89. 1. 10), 349호 (89. 4. 10) 및 54호 30310

~2858호 (89. 4. 13)의 관리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10호 (79. 1. 10)로 경기도 고등학교

구 양성동 245 일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교육감과 서울특별시  
경찰으로부터 학교용지 해제면허가 있어 우리시 89년 4월 25일  
도서관기록서일(학과)증명서 (89. 4. 25)에 이어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12호 및 종합대학 16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학교용지 해제면허가

준비 완료

3539

첨부: 명예회복 1차.

(제12차)

수신: 진영우 장관 (도시환경부장관)

제목: 갈 응

1. 우리 회사 도시환경부(부서)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회문 첨부 3월 1일.

(제13차)

수신: 흐우희 - 장관

제목: 관보에 제 213.

1. 다음과 같이 관보에 제 213/입니다.

가. 기재부문: 04.

나. 기재부문: 도시환경부(부서) 부장까지.

다. 기재부문: 도시환경부(부서) 부서장

라. 기재부문: 법정 고지문.

첨부: 회문 첨부 2부.

(제14차)

수신: 영동도지사장 (도시환경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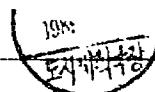
제목: 갈등

1. 도장 30010~3078호 (89. 4. 13)가 제작됨.

2. 이 호는 영등포구 양화동 246 일대 도시재생사업(학교)에서  
가로수를 허물고 새길에 대체로 벌집과 같이 고정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험보하고 각각의 인증 도장에 각각의 수련에 쓰여  
있도록 했던 것.

첨부: 고리를 새겼을 때의 각 1부.

(제152)



수신: 대체로 영등포구 양화동 246 (학교)

제목: 갈등

1. 관리 25423~543 (89. 1. 18)가 349호 (89. 4. 18)가 제작  
됨.

첨부

2. 이 호는 관리 우편으로 도시재생사업(학교)을 벌집과 같이  
가로수를 허물고 새길에 편리하게 고정하고 하루에 바꿨습니다.

첨부: 고리를 새겼을 때의 각 1부.

(제164)

수신: 노현기 창조 - 341

3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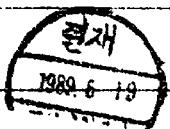
1505-25(2-2) 일(1)월  
85. 9. 9. 증인

190mm×268mm 인쇄용지 2kg 60g/m<sup>2</sup>  
가 40-41 1988. 9. 23

“내가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 우리사 할머니는 1945년(제2차 세계대전)에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돌아온 후 종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45년 8월 15일

수신처: 조선미술원. 서예부.



고

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261 호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1. 우리시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 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1항의 관한위임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동법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5.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규모( $m^2$ )	비 고
기정	학 교	영등포구 양평동 245일대	4,990	
변경	"	"	0	봉영여중이적지

나. 도면 : 영등포구청 비지도면과 같음. 끝.

위치도  
S=1:3000



'89. 4. 25.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록

=====

(39년 제3차 본회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의 개 회 상 황

○ 일시 : 8월 25, 15:00 ~ 18:00

○ 장소 : 소집실

○ 참석 : 21명, 16명

부서(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회(운백영)	안여배	"	김정동
"	오희영	"	안범수
"	최의소	"	도철웅
"	홍구	"	박우서
"	제일	"	김영수
"	민식	"	강덕기
"	연종	"	이동
환경국(이우민)	이찬	의원	김태중
"	장호	"	임철순
"	장호		

참석 : 서기 1명, 1군 이중재, 도시계획과장 변영진,  
 도시개발과장 계병, 재개발과장 박명화,  
 주택개발과장 김갑, 시설계획 2과장 김영환,  
 환경국장 김철순.

제 8안 서울역 - 서대문 계3구역 계2지구 건축 계획 변경결정 가 결

○ 서대문구 미근동 219일대

- . 건폐율 39 - 41 → 34 - 35%
- . 용적률 777 - 816 → 639 - 669%
- . 총 수 20/4 - 19/4

제 9안 주택개량재개발(상도제5구역)구역 결정 및 공원변경결정 가 결

○ 동작구 상도동 121번지 일대

- . 구역결정 25,340m<sup>2</sup>
- . 공원변경결정 (감 2,030m<sup>2</sup>)  
497,502 → 495,472m<sup>2</sup>

제10안 학교결정 가 결

○ 종로구 혜화동 90 - 3

- . 61,419m<sup>2</sup> (가톨릭신학대)

제11안 학교결정 가 결

○ 서대문구 냉천동 31

- . 24,360m<sup>2</sup> (감리교신학대)

제12안 학교변경결정 가 결

○ 동작구 흑석동 44 (중앙대)

- . 138,943 → 137,242m<sup>2</sup>

- 제13안 학교변경 결정 및 도로결정
- 성동구 차양동 674(광양중교)
    - . 40,248 → 31,697m<sup>2</sup>
    - . 도로결정 L=6m, L=158m

보류

- 제14안 학교 변경 결정
-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5일대
    - . 4,990.7 → 0(해제)
    - . 봉영여중 이적기

가결

- 제15안 학교결정
- 구로구 고척동 76-193
    - . 10,280m<sup>2</sup> (고산국교)

가결

- 제16안 학교, 공용의정사, 도로 결정 및 은동장  
가스공급설비 변경 결정
- 구로구 고척동 63-6
    - . 은동장 96,640 → 59,020m<sup>2</sup>
    - . 학교 26,570m<sup>2</sup> (중.고교)
    - . 공용의정사 5,190m<sup>2</sup> (구로세무소)
    - . 도로 B=15m, L=570m
    - . 가스공급설비 11,435 → 10,503m<sup>2</sup>

가결

## 시설계획조례<sup>안</sup> (이하 계장)

### 제안설명(심의안에 의함)

미결정된 기존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 '위치 및 현황설명'

위원장      길거리(어 나온곳(산2의 16일대)도 학교로 결정하는 것 입니까.

계장      원래 학교 소유토지인데 이번에 문화재 보호구역과 공원용지는 제척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공원옆의 분리된 토지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김영수위원      학교소유 토지인데 공원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학교소유 공원용지는 공원을, 해제해서 학교용지로 하면 어떠합니까.

김영수위원      학교용지에도 연결된 공원이 있읍니다.

위원장      학교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하는것인데 가결하면 어떨까요

일등      동의(가결)

제11안 : 학교결정

○ 서대문구 냉천동 31.

24,360㎡ (감리교 신학대)

### 제안설명(심의안에 의함)

미결정된 기존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하는것이며  
교지 기준면적에 적합합니다.

#### '위치 및 현황설명'

위원장      기존학교인데 왜 지금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계장      감리교 신학대학인데 1905년에 설립되었으나 도시계획이 지금까지  
미결정 된것입니다.

- 위원장      지금까지 시설결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 계장      대학설치 기준령에 따른 교지기준면적이 모니터링 결과부에서  
                감축 승인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가결하면 어떨까요?
- 일등      동의(가결)
- 제12안 : 학교변경결정
- 동작구 흑석동 44 (중앙대)  
 $138,943 \rightarrow 137,242m^2$
- 계장      제안설명(설의안에 의함)  
  
학교부지와 구분된 흑석동 200-94구지는 (통행로로 활용되고  
흑석동 221-1(15m도로)은 기프장되어 (통행로로 활용되고 있어  
불합리한 시설을 조정해서 학교용지에서 (통행로로 활용되고 있어  
'위치 및 현황설명'
- 위원장      불합리한 시설을 조성 하는것인데 가결하면 ○, 아하요
- 일등      동의(가결)
- 제13안 : 학교변경결정 및 도로결정
- 성동구 차양동 674(광양중고)  
 $40,248 \rightarrow 31,697m^2$   
       도로결정 L=6    B=158m
- 계장      제안설명(설의안에 의함)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학교개설후 남은 자투리땅이 (통행로로 활용되고  
걸쳐 10여개소를 선정 작년에 시교위와 협의해서 교체해서 매수  
추진계획이 없는 토지로 교지 기준에 적합한 것 (통행로로 활용되는  
정하였으며 일부는 이미 해제 되었고 나머지를 (통행로로 활용되는  
'위치 및 현황설명'

- 위원장 해제하게 되면 강변도로가 넓어 질니까
- 김영수위원 넓어 지게 됩니다
- 위원장 강변도로옆에 있는 선이 무엇입니까
- 제장 4종 미관지구 선입니다
- 강덕기위원 해제 대상지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 제장 개인소유지이며 유적지가 있다하여 조사한바 존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김영수위원 당초 복원계획이 있었는데 가치가 없다해서 폐기된것이며 개인소유지이기 때문에 시교위 통보 근거에 의해 해제하여 허락을 해소코자 하는것입니다.
- 김경동위원 자투리 땅이 된것은 무엇때문입니까
- 제장 2개 학교를 결정했는데 개설후 남은 땅입니다.
- 오휘영위원 지금은 교지면적에 적합하지만 앞으로 학교 확장 필요가 있을경우 대비할때는 해제하면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서약 현재의 기준에 맞는다고 해제할 경우 나중에 서약 내용을 뜻하게 됩니다.
- 김영수위원 확장이 필요할것인가 하는 주관적 판단이 어려워 평의회였는데 확장 계획이 없으므로 해제,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 여홍구위원 학교용지를 해제할 경우 주변이 완전해결 된다는 이해가 안됩니다.
- 위원장 시교위의 하태일위원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제정이 모자라 수용을 못하고 민원인은 해제를 구해서 포기하겠다는 의견 같은데 해제하고 나면 다음에 다시 결정하는 없다고 봅니다 이와 유사한 토지가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해제 한다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안영배위원 교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 계장 11,000평 정도입니다
- 여홍구위원 현재 2개 학교를 합해서 8,000여평됩니다
- 이광노위원 문교부에서는 교지확보가 근원하다해서 국교를 소형화한 미니국교를 한다는데 이는 가능한 면적이라고 봅니다
- 오희영위원 공원을 이용하면 운동장 없이도 학교가 가능하며 운동장을 확보 할려면 상당한 면적이 필요한데 꼭 운동장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김경동위원 국민학교 수요를 검토받아서 조치하면 어떨까요
- 김영수위원 그것은 이미 교위에서 의견이 나온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아파트를 지을경우 입주자 통행로가 없어 학교 뒷길이나 강변로를 사용하도록 요구할것이 예상되고 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시 교위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재검토 해보도록 보류하면 어떨까요
- 일동 등의(보류)
- 제14안 : 학교변경결정
-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5일대  
 $4,990.7 \rightarrow 0$  (해제)  
봉영여중 이적지
- 계장 제안설명(심의안에 의함)  
양평동 노타리 30m 도로변에 목동신시가지 개발시 이전해간 후처  
지로서 영등포 관내에 학교부지 3개소가 초과확보되어 있으며  
기준면적이 부족하뿐아니라 소음공해지역이어서 학교부지를 해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 및 현황설명'

- 위원장 이당을 매도해야 학교신축비용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학교이전지에는 아파트 건축을 않겠다고 발표한적이 있는데 이전지는 공공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아파트나 상가 건축은 근탄하다고 봅니다.
- 김영수위원 그것은 도심지의 이전지에 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도심만 극한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학교용지 해제를 않으면 이전이 불가합니까
- 계장 이전은 이미 되었습니다.
-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인데 처분허가가 된것입니다
- 위원장 학교용지 해제를 의결하고 나면 다른지역에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근탄합니다.
- 여흥구위원 지가상승에 상응하는 구상을 보고 해제결정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 시교위의 하태일위원의 의견은 어떤지요
- 하태일위원 인근에 유통지역 시설이 여유가 있고 기준면적의 측소가 어려워 인접에 4,000여평 확보해서 옮기면서 처분하는것이며 이전지는 이미 전체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매각후의 용도는 어떻게 될까요
- 안영백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그후의 문제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여흥구위원 영동포지역은 환경이 매우 나빠서 서울의 사막이라 할정도입니다
- 오휘영위원 교육시설이 이전해가면 해제하는것은 이해가 됩니다
- 교육시설이 이전해가면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우가 있는데 공원이 되는것과는 영향이 다른데, 지금시점에서 해제는 불가피 하다고 보며 그러나 앞으로의 사용 문제도 검토 되어야 하며 도시관 같은것이 지역 주민에게 좋을것 같군요
- 앞으로의 활용 문제도 서울시에서 조정해서 궁단의 균형복지 시설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광노위원 그 문제는 시당국에 맡기고 해제는 물가피 하며 가능하다면 서울시에서  
매입하면 좋겠군요
- 위원장 일단 해제에는 동의하시는데 가결하면 어떨까요
- 일동 동의(가결)
- 제15안 : 학교결정.
- 구로구 고척동 76-193 10,280m<sup>2</sup> (고산국교)
- 계장 제안설명(심의안에 의함)
- 과대 과밀 학급 및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 남부교육구청의 요청으로  
학교용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위치 및 현황설명'
- 여종구위원 소음방지 대책은 도로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야 겠습니다.
- 계장 방음벽은 설치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광노위원 상임기획단 의견에 부적합한 토지로 되어 있는데 현황이 어떤가요  
건너편에 운동장이 있는데 입안된 위치는 소음공해와 지가가 높아  
부적하다고 보여집니다
- 상임기획단 다음안이 운동장에 시설을 결정하는 것인데 보시고 결정하면 어떨까요
- 일동 동의(제16안과 함께 가결됨)
- 제16안 : 학교, 공용의청사, 도로결정 및 운동장 가스공급 설비 변경결정
- 구로구 고척동 63-6
  - 운동장 96,640 → 59,020m<sup>2</sup>
  - 학교 26,570m<sup>2</sup> (중, 고교)
  - 공용의청사 5,190m<sup>2</sup> (구토세부소)
  - 도로 B=15m L=570m
  - 가스공급설비 11,435 → 10,503m<sup>2</sup>

- 제 장 제안설명(승인안에 의함)  
운동장 결정후 장기 미집행 지구인데 여기에 공용의첨사와 학교 및  
가스공급설비를 변경결정 하는것 입니다.  
'위치 및 현황설명'
- 위원장 중고등학교는 언제 건설됩니까  
계 장 교위 요청으로 학교용지로 결정만 하여 주면 사용은 교위에서.  
하게 됩니다.
- 오휘영위원 운동장에 국민학교 시설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경동위원 시민이 사용할 운동장을 축소 하는것은 부적당 하다고 보여집니다
- 계 장 안양천 고수부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 김영수위원 오래된 운동장 결정시설인데 활용할수 있을만큼 남기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 이광노위원 제15안의 국민학교 결정지에는 수영장 같은것을 시설하고 운동장  
일부를 국민학교로 결정하면 어떨까요  
김영수위원 국민학교 이므로 취학아동관계학단지 도로횡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안영배위원 운동장의 대지모양으로 보아 운동장을 할애할 경우 모양이 적합하지  
않군요
- 위원장 면장대로 볼때 운동장을 많이 남겨 두는것도 좋지만 자녀교육 관계  
인데 학교를 공해, 소음등이 심한곳에 결정하면 불합리. 하다고 보여  
집니다.  
혹시 시교위에서 대지를 매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하태일위원 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그쪽이 있으며 토지는 결정후 매입할  
예정입니다
- 이광노위원 육교를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국민학생들인데 집가까운 곳에 학교를 필요로 할것같군요  
제15안을 포함해서 가결하고 국민학교 문제는 시교위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어떨까요
- 일동 동의(가결)  
제17안 : 도로변경결정  
·o 서초구 양재동 20-4  
 $L=12m$  (가각전체)  
강남대로 삼행산 차량의 우회전시 충돌사고 발생위험이 있어 가각을  
전체하고자 합니다.  
'위치 및 현황설명'  
위원장 서유지입니까  
계장 체비지 입니다  
위원장 체비지 하면 전체를 가각으로 만들지 일부를 남겨 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인식위원 중요한 가각도 아닌데 전체하는것 보다 필요한면적만 하는것도,  
마땅 하다고 봅니다.  
도철웅위원 몇m 도로입니까  
계장 8m 도로입니다  
김인식위원 건물을 지을려고 가각을 전체 해달라는 요구가 아닙니까  
김영수위원 가각 일부를 녹지로 조성하면서 계획선을 자르는 것인데 체비지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계장 주거지역내 대지이기 때문에 녹지는 하기 위해서는 도로용지로 변경  
하여야 합니다.  
위원장 가결하면 어떨까요